

전문가회의 자료집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1)

2009. 2. 26

## 일 정

■ 일시 : 2009년 2월 26일 (목) 오전 10:00~12: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및 토론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길준규 (아주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 목 차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 5
2. 자율규제와 공법이론 ..... 5
3. 자율규제의 모델수립과 현행법제 분석 ..... 6
4. 단체참가모델의 법제개선방안 ..... 6

###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개념정의 ..... 9
- II. 유형 ..... 9
- III. 연구분야 ..... 10
- IV. 확대방안 ..... 10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3

### 최철호(청주대학교 교수)

1. 연구대상 ..... 17
2. 연구방법 ..... 17
3. 주요 연구내용 ..... 18

### 길준규(아주대학교 교수)

- I.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 21

Ⅱ. 정보통신법에서의 자율규제 .....	22
Ⅲ. 정보통신법에서의 자율규제의 시도 .....	23
1.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	23
2.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쟁 .....	31

곽관훈(선문대학교 교수)

Ⅰ. 연구의 필요성 .....	33
Ⅱ. 연구의 기본방향 .....	34
Ⅲ. 연구의 주요내용 .....	35
1. 개 요 .....	35
2. 자율규제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 .....	35
3. 자율규제기관의 권한에 대한 문제 .....	36
4.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 .....	36
5.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	37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 □ 자율규제의 개념 정립

- 자율규제의 개념
- 유사개념과의 구별
  - 공사협동론(거버넌스)과의 차이점
  - 각종 협정수법과의 차이점
  - 행정규제 완화 등과의 관련성 내지 대체성

### □ 연구의 방향성

※ 현재 자율규제, 自主規制, soft law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규제수법과의 차이성 등이 정리된 바가 없음.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는 보고서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함.

또한, 현재 규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부정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참고되거나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자율규제와 공법이론

### □ 자율규제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공사법이론
- 공공부문론
- 다원적 법관계론
- 공공단체론

□ 자율규제의 허용조건 분석

- 법이론적 분석
- 비교법적 분석

※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제가 전통적 공법이론과 어느 정도 친숙한 분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이론적 연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보고서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면서도 언급될 필요가 있음.

### 3. 자율규제의 모델수립과 현행법제 분석

□ 자율규제의 모델

- 단체자율모델
- 단체참가모델
- 유도형모델
- 감사인증모델

□ 자율규제의 제도설계준칙

□ 현행법제의 분석

- 자율규제수법을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법분야 및 관련법제를 특정해서 구분

※ 크게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는 수법 내지 규정을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현행 법제를 일응 이러한 모델로 구분. 모델에 따른 제도설계의 기준 제시.

### 4. 단체참가모델의 법제개선방안

- 개별적·작용법적 행정감독 - 증권거래

- 행정감독결여 - 계약에 의한 외부위탁
- 규제시스템간 조정 - 청소년 보호

※ 마지막으로, 네 가지 모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 이러한 법제개선방안의 제시는 향후 나머지 자율규제모델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음.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개념정의

최근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율규제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자율규제의 개념정의는 자명한 것은 아님. 학자마다, 국가마다, 법분야마다 상이한 개념정의와 상이한 용어하에서 이해되고 있음. 자율규제로 논의되는 현상들은 매우 광범위하며,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주체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 및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08년 12월에 개최된 ‘자율규제확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워크숍’에서는 주로 정부개입 또는 간섭이 없는 순수한 개인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예컨대, 자기인증제도, 민간위탁방식, 특수법인에 의 업무의 위임·위탁,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보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수한 개인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외에도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 또는 간섭이 매개된 형태의 자율규제 역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고, 이 또한 자율규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먼저 그동안 논의되어 온 상이한 용어를 개관한 후 연구보고서에서의 자율규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II. 유형

자율규제의 개념정의와 용어가 상이한 만큼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상이함. 법적 성격이 유사한 자율규제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선



행할 필요가 있음. 즉 자율규제는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자율규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율규제제도를 소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유형화 작업 후 연구보고서에서의 자율규제의 개념에 해당하는 유형을 추출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 Ⅲ. 연구분야

‘자율규제확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하에서는 먼저 총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론에 해당하는 법분야별 검토를 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분야로는 언론규제, 환경·에너지규제, 상사·금융규제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율규제분야 중에서 연구의 기간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분야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특히 환경에너지규제분야의 경우에는 순수한 개인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 외에도 자발적 협약이나 협상, 자율관리제도 등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에 의한 자율규제의 형태 역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Ⅳ. 확대방안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성, 저렴한 감독 및 집행 비용, 유연성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강제성·법적 구속력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적인 집행에 곤란이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자율규제 활성화 또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나, 자율규제 이행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음. 또한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자율규제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박 종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연구범위의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본 연구과제는 제안 당시 여러 명이 연구진이 참여하여 3년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었던 것임. 따라서 종래 제안되어 있던 연구내용과 범위를 연구진 1명이 1년 동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본원에서 협동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법제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실행방안”과도 일정 부분 연구범위나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연구책임자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연구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비록 과제명은 “자율규제 확대”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확대”로만 경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율규제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의 적정화라고 생각됨. 맹목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율규제의 적정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법 분야에서는 이른바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이 자율규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하에서는 환경법상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 범위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함.
-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이란 정부, 기업, 민간 부문이 일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스스로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려

는 방식을 말하는 것임. 이와 같은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이 부각되는 근거에는 잠재적인 환경오염원인자(기업)가 규제자(정부)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술·공정·제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 및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 준다면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

- 환경관계법의 최상위법에 해당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고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규제수단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종래의 명령통제방식(Command & Control)과 경제적 유인방식(Economic Incentive)의 보완장치로서,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적·합의적 행정작용을 염두에 두는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혹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행 환경법상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의 예로는 (i) 자가측정, (ii) 환경관리인, (iii) 자발적 환경협약, (iv) 환경경영체제인증, (v) 환경친화기업지정, (vi) 환경라벨링, (vii) 환경감사 등이 들어지고 있음.
- (i)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자가측정은 원칙상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자율적 환경관리방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ii) 환경관리인제도는 환경관리인이 사업자를 위하여 사업자의 감독을 받으며 사업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자율적 환경관리수단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환경관리인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에 정해진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청이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명령통제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iii) 자발적 환경협약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인을 제공하고 협약 불이행 시에는 유인을 취소하거나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환경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식임. 현행 환경법상의 예로는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의 보전협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관한 자발적 협약,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 등이 있음. 자발적 환경협약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기업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환경목표를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다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 환경협약 체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부과금의 감액 등 충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최 철 호

(청주대학교 교수)

## 1. 연구대상

○ 공법학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이 규제행위의 주체로서 권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행정목적의 달성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자율규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사회 및 민간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자율규제란 정부의 개입(행정규제)은 줄이고 시장자율(자율규제)은 확대하는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규제완화 자체가 자율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율규제를 논하되 규제완화론의 연구가 자율규제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연구대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① 자율규제의 일반론으로서 자율규제의 개념 및 생성배경을 논하고, ② 자율규제의 주체, 즉, 자율규제기관의 법적지위와 종류를 분석하고, ③ 자율규제의 유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 자율규제의 관한 논의는 자칫 행정조직개편 등의 행정학적 논의나 민간을 이용한 효율성의 확보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연구로 흐르기

쉬운데 본 연구가 법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몇 개의 법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자율규제가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경제관계법(독점금지관련 경제법,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증권관련법, 소비자법), 환경법, 언론법, 인터넷 등과 관련한 정보법, 교육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개별법분야의 자율규제기관 또는 자율규제의 유형에 관한 실태 분석을 한다.

자율규제의 집행과정에서 자율규제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사업자체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해 논점을 맞춘다.

○ 자율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다.

자율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나 법적 처리구조 또는 기능조건 등에 대해서 선진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의 특수성과 보편성 등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는 것으로 한다.

### 3. 주요 연구내용

○ 위 1의 연구대상 중 ② 자율규제주체와 ③ 자율규제의 유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 자율규제의 주체에 관한 연구내용 : 현행법상 자율규제기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자율규제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율규제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 기능적 자치행정 방식 : 자율규제 가운데 가장 공적 특성이 강하고 강력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당해 규제임무를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는 자율적인 규범, 즉 자치규칙의 제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다.

- 공무수탁사인에 의한 규제 : 규제 임무를 수행할 공적주체를 새로이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인 가운데 당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공적임무의 수행을 맡겨서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의 공적 규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받는데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행정법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순수한 사인 또는 단체에 의한 규제 : 예컨대 민간기업 사이에 협정 또는 행정과 민간 사이에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하는 방식도 있다.

○ 자율규제기관이 만든 규칙 내지 기준의 법적 구속력의 분석

○ 자율규제기관의 자율성 정도 내지 감독관청의 개입의 정도에 따른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그 외 주요 외국의 자율규제기구의 현황 분석

- 미국, EU, 독일, 일본 등의 자율규제기관 및 자율규제유형의 분석

○ 위 1의 연구대상 중 ③ 자율규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

- 단체자율 모델, 단체참가 모델, 감사인증 모델, 유도 모델 등 유형에 따른 분석

○ 개별법분야별 자율규제의 대상 영역 분석

- 경제법에서의 자율규제: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규약 등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1)

- 소비자법에서의 자율규제: 자율약관 등
- 정보법에서의 자율규제: 인터넷 자율규제 등
- 언론법에서의 자율규제: 신문·방송 등에서의 자율규제 등
- 환경법에서의 자율규제: 자발적 환경협약 등
- 교육법에서의 자율규제: 교육참여자의 자율협약 등
- 원자력법에서의 자율규제: 원자력 안전 규제에 있어서의 민간규격의 채용 등

길 준 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흔히 ‘자율규제’(Selbstregulierung)은 마치 자율규제의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반대는 ‘법률상 규제’(rechtliche Regulierung)이다. 즉 국가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인을 규율하는 것은 법률상 규제라고 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간에 협회를 조직한다던가 아니면 공동협약 등의 형태로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규율하는 형태를 자율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자율규제와 규제완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규제완화**’(Deregulierung)이라는 것은 종전의 규제를 다른 완화된 규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키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규제철폐 내지 규제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율규제로 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개별 경제영역에서 자율규제와 법률상 규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인 스스로 협회를 조직하거나 공동협약을 만드는 것이 자율적으로 행해지기 쉽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등의 공익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법적인 틀을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에 의한 법적인 대강을 제공하는 경우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라고도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사인의 행태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회(Kammer)를 조직하거나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영역에서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하여는 사인의 공서양속, 즉 선량한 관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차원에서는 ‘상도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인인 기업 스스로가 건전한 기업운영을 통하여 적당한 부를 창출하겠다는 자세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가 단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회사의 장래적 영업이익이라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제 경제 6단체가 정부와 정당에게 기업규제완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주로 탈법의 주체이었지 과연 규제 대상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 II. 정보통신법에서의 자율규제

정보통신법은 다른 법과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 중의 하나가 ‘기술법’ 내지는 기술발전에 따른 ‘그림자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항상 뒤따라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서비스 단계에서 이미 사업허가를 위하여 법이 선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정보통신법의 특성상 국가가 사인인 사업자를 일일이 법령으로 규제하기란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정보통신법은 경제행정법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국가 - 국민 - 사업자’ 라는 삼각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국가의 관여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편 정보통신법은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관계도 문제되므로 기술표준 등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틀을 국가가 법령의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Ⅲ. 정보통신법에서의 자율규제의 시도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법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그 필요성과 이론적 구축에 관한 문제점을 개관하기로 한다.

#### 1.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 (1)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고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다시 인터넷(포털)에 대한 내용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융합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와 방송규제외에는 별다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입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촛불시위’로 촉발된 인터넷규제는 과도한 악법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법의 법리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자율규제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2008년 12월에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아하 자율규제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주요 포털들이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만든 협의체’라 한다.

##### (2) 현행법령

작년에 촛불시위 등으로 우리 사회가 뜨거웠다. 이러한 인터넷문화를 통제하고자 국가는 모여배우의 죽음을 빙자하여 소위 ‘최진실법’을

만들어냈다. 후에 여론을 질타를 받자 최진실범이란 닉네임만 제거한 채 2008년 6월 13일날 슬그머니 통과시킨 것이 소위 ‘나경원법’이다. 이는 이후에 ‘사이버모욕죄 논란’을 가져왔으나 현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관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3) 기반 법리의 확정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법률상 규제를 실현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특수성에 따른 법리를 확정하여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위에 새로이 자율규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살펴 보면, 인터넷서비스는 접속 서비스는 기간사업자이나, 기타 사업자는 주로 부가사업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융합이후로 통신도 아니고, 방송도 아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지위 재편 논의 중(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다. 한편 외국

에서는 유럽공동체는 정보사회서비스(Infomationsgesellschaftsdienste)와 독일은 원격매체(Telemedien)서비스로, 미국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상의 분쟁해결을 포함하여 법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우선 인터넷서비스에 어떻게 법적 지위를 재분류할 것인가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재분류방안과 맞물리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상의 분쟁**은 주로 인터넷서비스의 이용 행태 중 게시판서비스에서의 위법게시물(음란) 및 댓글, 채팅 중 욕설, 개인정보의 침해 등의 다양한 위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를 분류해보면, 게시판서비스, 채팅서비스, 이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게임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이버) 모욕, 음란 등의 전통적인 법질서 위반사범으로서 형법상 사회적 및 개인적 법익 침해사범과 인터넷상 전형적인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의 침해사범으로 대별될 수 있다.

최근 사이버모욕죄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서비스분쟁을 전통적인 처벌방안(형법)외에 별도의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범죄의 중첩규정 및 양산이라는 논란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상의 **이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위법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종래에는 주로 음란물의 게시에 따른 삭제의무 정도가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게시물의 일방적인 삭제, 반복 게시제한 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국가 - 인터넷서비스사업자 -

원고 - 피고간의 사각관계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의한 게시물 일방삭제, 포맷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제3자로서 분쟁에 개입되고 있다.

이번 **나경원법**에서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인터넷규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이 적절한 것인가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분쟁조정법적 성질을 보면, 분쟁조정이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적인 화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성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의 분쟁해결제도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전문적이거나, 2) 비재산적인 피해에 관한 분쟁으로서, 3) 비형사법적인 범익침해, 4)경미한 사건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내의 대부분의 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 조정신청인을 도와서 사건조사를 하게 됨으로 양당사자간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있다.

## 2.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쟁

### (1)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민원은 전체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민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우세하나, 그

처리에서는 관할문제로 속시원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2) 구축방안

이러한 점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이용자)와 사업자간의 품질보증협약(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자율규제방안이 요청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은 물건을 팔기만 했지, 사후관리가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전자제품 등을 필두로 점차 사후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아직도 여전히 기술을 소비자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협약, 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연구하여 사업자들간에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좋은 자율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다.

곽 관 훈

(선문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 I. 연구의 필요성

□ 자율규제는 (i) 현장에서 기동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ii) 법령위반 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iii) 적은 비용으로 규제업무가 가능하다는 점 및 (iv) 법령보다도 높은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증권관련 분야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이 자율규제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서 효율적인 규제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자율규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권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규제 전반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점차 복잡화되고 있는 경제현실 속에서 기업의 모든 행위를 행정기관이 일일이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자율규제기관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하는 경우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됨

△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기업에 대한 사후적 규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전예방적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율규제는 기업에 위법행위를 사전예방적으로 규제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규제시스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Ⅱ. 연구의 기본방향

□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시장진입제한과 같은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적인 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 그러나,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미 시장 및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규제(행정형벌, 과징금부과, 손해배상 등)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 따라서, 사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자율규제의 도입임

□ 즉, 상사법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Ⅲ. 연구의 주요내용

#### 1. 개 요

□ 법률적 측면에서 자율규제란 법률제정 등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임. 본래 법률의 제정 및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나,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민간이 법률형성 및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임

□ 따라서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법적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할 것인가, 즉 자율규제의 주체와 권한위임과 관련된 부분임.

□ 또한, 자율규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기적 측면과 자율규제라는 공적 측면이 충돌하는 이익충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됨

#### 2. 자율규제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

□ 현재 자율규제가 정착된 증권시장의 경우 시장운영자인 증권선물거래소나 사업자단체인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현재는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됨)이 자율규제의 주체였음

□ 이를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의 주체는 (i) 별도의 시장이 있는 경우 시장운영주체가 될 것이며, (ii) 그 외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

□ 자율규제기관이 누가 되는가는 업종이나 기업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자율규제기관의 권한에 대한 문제

□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 등의 제정주체는 정부이며, 위임입법에 의해 민간에게 법률의 제정권한 및 집행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임. 따라서 자율규제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 그 권한범위 및 위임입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에 따라 어떠한 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자율규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떠한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자율규제기관에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처분권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4.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

□ 자율규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자율규제기관이 시장운용주체인 경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거래자들이 참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 참가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그

러나 이 경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율규제기능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자율규제기관이 사업자단체인 경우 구성원인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게 됨

□ 태생적인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자율규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됨

## 5.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는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자율규제기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정립 방안 및 구체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 시장운동기관 및 사업자단체와 별도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관을 마련하는 방안, (ii) 사업자단체 등에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iii) 자회사 형태로 자율규제기관을 두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기관구성상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경우 올바른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1)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